##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5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이재관·오세희·송재봉

소병훈 • 이병진 • 박지원

허성무 • 양부남 • 박지혜

전진숙 · 박해철 · 정진욱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 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 기술에 대해서 수출 및 인수·합병 승인,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.

그런데, 「소재・부품・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핵심전략기술(이하 "핵심전략기술"이라 함) 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해당 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・합병 승인, 신고제도나 유출을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, 이를 개선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 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호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##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

5. "중요핵심전략기술"이라 함은 제1호자목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중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을 말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중요핵심전략기술 지정·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"국가핵심기술"을 "국가핵심기술(중요핵심전략 기술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"산업기술"이라 함은 제품	1
또는 용역의 개발・생산・보	
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	
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	
서 행정기관의 장(해당 업무	
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	
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	
관이나 법인 · 단체의 장을 말	
한다)이 산업경쟁력 제고나	
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	
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	
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	
령(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에	
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	
다)에 따라 지정·고시·공고	
•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	
말한다.	
가. ~ 아. (생 략)	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자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</u>
	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

자. (생 략) 2. ~ 4. (생략) <신 설>

제7조(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 제7조(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 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 업기술보호위원회(이하 "위원 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• 2. (생략) <신 설>

3. ~ 5. (생략)

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\_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 심전략기술

차. (현행 자목과 같음)
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"중요핵심전략기술"이라 함 은 제1호자목에 따른 핵심전 략기술 중 해외로 유출될 경 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 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 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을 말한다.

치 등)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 | 치 등) ① ------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중요핵심전략기술 지정·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생 략) 제9조의2(국가핵심기술의 정보 제9조의2(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 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 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된다. 다만,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 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 비공개) ① ---------국가핵심기술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(중요핵심전략기술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-----② (현행과 같음)

② (생략)